

#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

신청 대상자 <sup>1</sup>	성명	홍길동		(한자 : )
	등록기준지 <sup>2</sup>			
	※ 뒷면 작성방법 5.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신청내용	주민등록번호	123456 - 1890011		
	1. 일반증명서		2. 상세증명서	
	① 가족관계증명서 ..... ( ) 통 ② 기본증명서 ..... ( ) 통 ③ 혼인관계증명서 ..... ( ) 통 ④ 입양관계증명서 ..... ( ) 통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..... ( ) 통		① 가족관계증명서 ..... ( / ) 통 ② 기본증명서 ..... ( ) 통 ③ 혼인관계증명서 ..... ( ) 통 ④ 입양관계증명서 ..... ( ) 통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..... ( ) 통	
	3. 특정증명서 <sup>3</sup> ①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후견) ..... ( ) 통			
	4.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..... ( ) 건			
	5. 수리·불수리 증명 ..... ( ) 건			
	6. 열람(신고서류) 년 월 일 접수		신고	
	7. 종전 「호적법」에 따른 제적 본적 : _____ 호주 : _____ 대상자 : 의 _____		① 제적등본 ..... ( ) 통 ② 제적초본 ..... ( ) 통 ③ 제적부열람 ..... ( ) 건	
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(뒷부분6자리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공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 신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1.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	
청구사유 <sup>4</sup> 은행제출				
소명자료				
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<sup>4</sup>			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	
<sup>4</sup> 신청인 <sup>4</sup>	성명	신사임당	주민등록번호 <sup>5</sup>	888899 - 1234567
	주소	서울시 강진구 자봉로 3가길 26		
위임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<sup>5</sup>	신청인 자격 홍길동 의 모
	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(위임장은 별도 첨부)			
20 년 월 일				
○○시(구) · 읍 · 면장 귀하				
※ 수수료	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,000원,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·증명(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, 수리·불수리 증명 등),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(뒷면 참조)			
1.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"별지와 같음"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 를 간인(서명)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 방법 5.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,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3.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·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4.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,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 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 5.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※ 법 제117조 3호 : 제1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				
※ 범 제117조 3호 : 제1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				
※ 발급관서가 "시"인 경우에는 "구"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.				